

【논문】

공화주의의 유형과 그 비판: 강한 유형과 약한 유형

이 명 순*

【주제분류】 정치철학, 사회철학

【주요어】 공화주의, 자유, 법, 개인, 국가, 아리스토텔레스, 한나 아렌트, 필립 페티, 모리치오 비롤리

【요약문】 이 논문은 복잡하게 발전해온 공화주의를 규정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먼저 공화주의는 자유관에 따라 강한 유형과 약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강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자유를 자기지배로 해석하고, 개인이 적극적 정치 참여 과정에서 자신의 탁월성을 발휘할 때 인간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약한 유형은 자유를 비지배로 해석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 강한 유형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만 개인이 인간다울 수 있다는 전체론적 입장을 취하고, 약한 유형은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법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두 유형 모두 개인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두 공화주의는 모두 비판의 여지가 있다. 첫째, 강한 유형은 현실 정치에서의 가치 다원주의와 충돌하고, 소수 또는 다수의 정치 참여를 위한 자유를 위해 나머지 구성원들의 자유 억압, 즉 지배를 허용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둘째, 약한 유형은 자유주의적 권리 개념, 즉 법 이전의 자유와 평등 및 동의 개념 없이는 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힘들다. 게다가 이 유형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개념을 자유주의 일반의 자유 개념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공화주의는 자유주의 정치 체제를 대체하는 이념이 되지 못하는 못한다.

*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I. 공화주의의 복잡성

공화주의는 그 기원이 오랜 만큼이나 복잡한 사상이다. 그만큼 현실 역사에서 공화주의를 표방하고 나온 사상가나 정치가들의 공통점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공화주의자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가 하면, 어떤 공화주의자들은 시민 대중의 배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고대 로마 공화정의 경우 군주를 공화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지만, 어떤 공화국에서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라는 순수한 세 형태 중 둘이나 셋을 동시에 채택하는 혼합정체를 채택하기도 한다. 게다가 근대에 이르러서는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와의 착종으로 인해 공화주의의 독특성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공화주의는 군주 일인에 의한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어하기 위해 법치와 견제와 균형을 주장하는데, 이는 자유주의의 제도이기도 하다. 공화주의의 현실적 모습이 지니는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과연 무엇이 공화주의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공화주의는 정치철학사에서 근대 이후 자유주의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 이념으로 발전해 왔다. 필자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하나의 규정을 갖기 힘든 공화주의를 규정하고자 한다. 그래야 정치 이념으로서의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며,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 지점 역시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대표적인 공화주의 정치철학자들을 중심으로 공화주의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편린으로 나타나지만 다양한 공화주의 입장들 전체를 아우르는 틀로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공통 요소임을 밝힐 것이다. 둘째로, 필자는 각 유형의 공화주의가 지니는 난점을 지적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이 목표로 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화주의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입장들의 유형화, 다른 하나는 각 유형에 대한 비판

이다.

II. 공화주의의 두 유형

공화주의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의 공화주의로 한나 아렌트가 이에 속한다. 필자는 이 유형을 강한 공화주의라 이르겠다. 그 이유는 이 전통에서는 자유를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적극적 의미의 자유란, 자유가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실현됨을 의미한다. 둘째 유형은 약한 공화주의이다. 이 입장은 자유의 적극적 실현보다는 자유 상실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자유의 보존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전자보다는 약한 의미를 띤다. 이 유형에는 필립 페티, 모리치오 비롤리 등이 속한다. 이 두 유형의 공화주의가 어떤 입장을 갖길래 위와 같이 해석되는지를 살펴보자.

1. 강한 유형의 공화주의

강한 공화주의는 특정한 인간관, 즉 인간다움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 이 유형의 공화주의의 원류는 아리스토텔레스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 규정하고 행복을 달성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탁월성을 발휘하는 것이라 본다.¹⁾ 인간은 좋은 습관에 길들여짐으로써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²⁾ 인간의 습관을 형성하는 정치체제가 어떻게 조직되느냐가 중요하다.³⁾ 여

1)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trans. by David Ross, and rev. by J. C. Ackrill and O. J. Urmsion (Oxford: Oxford Universtiy Press, 1998a),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2006, 1097a-1098a.

2) Aristotle, *ibid.*, 1103a-1103b.

3) Aristotle, *ibid.*, 1179b-1181b.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학』에서도 나타난다.

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인간들이 정치체제를 형성한다는 말이 방법론적으로는 개인이 전체보다 선행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의 인간관의 입장에서 볼 경우 부분보다 전체가 선행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히려 “도시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부류에 속하며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동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⁴⁾라고 말한다. 이는 개별자로서의 인간이 인간다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정치 공동체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은 정치체제에서 분리된 인간은 인간다움의 지위를 갖지 못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인간관은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 도시 국가를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왜냐하면 “좋은 삶이 전체로서의 공동체와 개별자로서의 우리들 각자 모두에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⁵⁾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한 개인은 자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을 이루고, 이 가족도 역시 필요에 의해 마을을 이루고, 다음으로 최고의 완성된 형태로 도시국가를 만든다는 것이다.⁶⁾ 이것은 인간이 동물과 같은 단순한 생존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좋은 삶을 꽃피우게 되는 것은 정치 공동체 내의 존재가 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규정 역시 이 맥락에서 해석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를 때, 한 인간이 정치체제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탁월성을 발휘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따라서 이러한 탁월성을 발휘하는 것은 자신의 좋은 삶을 이루는 행위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곧 인간의 자아실현의 조건인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훌륭하게 구성된 도시 국가가 행복을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한다[Aristotle, *Politics*, trans. by Ernest Barker, intro. by R. F. Stalle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b), 이병길, 박옥수 역, 『정치학』, 박영사, 2007, 1331b].

4) Aristotle (1998b), 1253a.

5) Aristotle, *ibid.*, 1278b.

6) Aristotle, *ibid.*, 1252a-1253a.

이다.

그런데 이러한 탁월성의 발휘를 통한 자아실현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정치 공간이 탁월성을 개발하고 발휘하는 장이다. 왜냐하면 정치 행위는 실천적 지혜와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⁷⁾ 정치 행위가 탁월성을 발휘함으로써 좋은 삶을 이루는 계기라면, 정치 참여의 자유는 그러한 탁월성을 발휘하는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⁸⁾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에서의 자유를, 한편으로는 “다수의 의지”라고 규정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하는 대로의 삶”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후자의 규정은 사람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배받아서 안 되고, 최소한 지배와 피지배를 교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귀결된다고 한다.⁹⁾ 이런 주장은 “정치적 결사체의 구성원들은 본성상 평등함을, 그리고 어떤 것에서도 다르지 않음을 목적으로 삼는다”¹⁰⁾는 주장에서처럼 평등의 이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곧 자유 실현의 동등한 분배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 개념은 이사야 벌린이 자유의 적극적 의미로 규정한, 자기지배로서의 자유로 해석된다.¹¹⁾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

7) Iseult Honohan, *Civic Republicanism* (London: Routledge, 2002), pp. 23-25.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실천적 지혜가 통치자에게만 독특한, 유일한 형태의 탁월성”(Aristotle (1998b), 1277b)이라 규정한다. 그는 좋은 시민의 탁월성이 '잘 통치하고 잘 복종하는 것'이고, “좋은 사람의 탁월성은 통치함 속에 존재한다”(ibid., 1277a)고 한다. 그는 “좋은 통치자란 좋은 사람이고,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인 반면, 시민은 실천적 지혜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한다(ibid., 1277a). 이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 모두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정체의 종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한다(ibid., 1281a-1282a). 필자가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자 한 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 행위를 통해 실천적 지혜와 탁월성이 발휘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8) “시민의 탁월성은 [...] 삶에 필수적인 일들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Aristotle, ibid., 1278a).

9) Aristotle, ibid., 1317a-b.

10) Aristotle, ibid., 1259a.

모두가 정치에 필요한 덕을 갖출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민 모두의 자기지배, 즉 광범위한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적극적 자유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룬다는 주장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¹²⁾

아리스토텔레스에 기원을 둔 강한 유형의 공화주의에 대한 현대판이 한나 아렌트의 공화주의이다. 아렌트는 많은 부분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와 공유한다. 일단 아렌트가 자신의 정치관을 전개하는 데에서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별이다. 사적 영역은 가정의 영역이고, 공적 영역은 정치의 영역이다. 전자의 특징은 욕구와 필요의 영역으로서 자연 필연성에 귀속된다. 왜냐하면 생존과 출산 등이라는 자연 필연성이 가정을 조직하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는 자연 필연성을 벗어난 자유의 영역으로, 인간은 이 영역에서 생존을 위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탁월성을 자유롭고 용기 있게 발휘하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적 삶(*vita activa*)을 노동(*labour*), 작업(*work*), 행위(*action*)로 나누어, 노동은 필연성 영역의 활동으로, 행위는 자유 영역의 활동으로 규정한다.¹³⁾ 이에 따라 아렌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유는 [...] 실제로 인간들이 정치 조직에서 함께 사는 이유이다. 그것[자유]이 없으면 정치적 삶 그 자체는 무의미할 것이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자유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장이 행위인 것이다.¹⁴⁾

11) Isaiah Berlin, "Two Concepts of Liberty,"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p. 131-134.

12) Iseult Honohan (2002), pp. 25-26.

13)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8), 이진우,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pp. 28-31. (이 글에서는 영문판의 쪽수를 따른다.)

14) Hannah Arendt, "Freedom and Politics," *The Liberty Reader*, ed. by David Miller (Boulder: Paradigm Publishers, 2006), p. 58.

우리의 정치 활동은 말과 행위로 이루어진다. 아렌트는 이 점에 주목해서, 말과 행위를 통해 개별자가 자신의 독특성을 정치 영역에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다.¹⁵⁾ 아렌트는 행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예측 불가능성을 제시한다.¹⁶⁾ 예측 불가능성은 통계학과 같은 계량적 수단에 의해 행위가 재단 또는 규정되지 않음을 뜻하는데, 이에 한 개인의 독특한 탁월성(*par excellence*)이 근거한다.¹⁷⁾ 탁월하다는 것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더 나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탁월성은 그의 독특성을 이루는 주요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아렌트에게서 정치적 참여란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아를 실현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처럼 자유가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 자유를 발휘한다는 것은 자유의 영역인 정치 영역에서 활동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렌트에게서 자유의 의미는 중첩적이다. 정치 영역이 필연성의 영역과 대립되는 자유의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자유는 자유 의지와 같은 형이상학적 의미를 획득한다. 다른 한편, 자연 필연성의 영역에서 생존을 유지하는 노동은 가족이라는 지배 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자유의 영역에서는 평등이 통용되고 지배 관계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의지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자유는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의 자유의 측면을 보면, 아렌트의 자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보다 더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를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직에 참여하고 배심원이 되는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지배하고 지배받음을 최소한 교대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반면, 아렌트는 오히려 모든 개인이 고유한 독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탁월성을 실현한다는

15) Hannah Arendt (1998), pp. 197-199.

16) Hannah Arendt, *ibid.*, pp. 231-232.

17) Hannah Arendt, *ibid.*, pp. 175-178, 그리고, pp. 192-193.

점에서 아렌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공통적이지만, 아렌트는 보다 급진적인 정치적 참여를 주장한다는 차이가 있다. 개인의 독특성의 실현, 즉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아렌트는 자유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다.

2. 약한 유형의 공화주의

약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상당한 친화성을 갖는다. 이 입장은 공화주의라 불리면서도 강한 공화주의보다는 자유주의에 더 가깝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들은 주로 근대 공화주의가 마키아벨리를 필두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마키아벨리에게서 나타나는 사상적 요소들을 공화주의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이 입장이 강한 공화주의와 다른 지점은 바로 자유에 대한 해석이다. 필자는 강한 공화주의를 살펴볼 때 인간관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약한 공화주의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가 자유의 개념으로부터 보다 잘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유 개념으로부터 시작하겠다.

약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자유를 일차적으로 도시 국가의 자유(Civitas Libertas)라 규정한다. 도시 국가의 자유는 두 측면에서 규정된다. 하나는 도시 국가가 하나의 개체로서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한 도시 국가 내에서 특정한 사람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 도시 국가의 의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정치 철학에서 자유가 일반적으로 개인과 국가 관계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전자보다는 후자의 의미에서 약한 공화주의의 자유관을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 일단 (도시) 국가의 자유는 국가가 하나의 정치체(body politic)로 비유되어 설명된다. 쾨팅 스키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개별 인간의 신체가 의지에 따라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않을 수 있을 경우에만,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그 신체는 자유롭다고 주장하듯이, 마찬가지로 국민들과 국가의 신체는 자신이 바라는 목적

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유사하게 구속되지 않을 경우에만,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자유롭다. 따라서 자유로운 인간들처럼 자유로운 국가는 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정의된다. 자유로운 국가는 그 정치체의 행위가 전체 구성원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공동체이다.¹⁸⁾

여기에서 핵심은 자유가 의지의 종속이 없는 상태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약한 공화주의자들이 자유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¹⁹⁾ 즉, 노예가 주인의 자의적인 의지 하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듯이, 국가의 자유는 누군가의 자의적인 의지 하에 있지 않을 때 보장된다는 것이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부터 폐기한 지배를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선택에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짐”으로 규정하고, 자유는 이와 대립된 의미에서 비지배(non-domination)로 규정한다.²⁰⁾ 즉, 자유는 타인이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는 상태인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자유의 상태는 현재 타인이 자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현재적 사실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음까지 포함한다.²¹⁾ 비롤리도 “공화주의적

18) Quentin Skinner, *Liberty before Liber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25-26.

19) Philip Pettit,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 31-35. 페릿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라는 제 3의 자유를 공화주의적 자유로 설명하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자아실현의 의미를 띠는 적극적 자유와는 다른 것으로 설명한다. 페릿의 제3의 자유는 적극적인 자기지배라는 개념을 탈피함에도 불구하고, 페릿이 이 자유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는 주인과 노예의 대립 관계, 즉 지배관계이다. 스키너 역시 자유인과 노예의 대조로부터 자유를 설명하며 이것이 신로마주의 문필가들(neo-roman writers)의 자유 개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Skinner (1988), pp. 39-47).

20) Philip Pettit, *ibid.*, p. 52.

21) Philip Pettit, *ibid.*, pp. 54-55. 이러한 자유관은 마키아벨리의 자유관으로부터 유래한다. 마키아벨리는 “자유를 회구하는 평민의 열망이 자유에 해로운 경우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 열망은 억압으로부터 또는 억압이 발

자유관은 자유의 부재를 간섭(벌린이 쓰고 있듯이 타인에 의한 침해)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의적 권력의 존재로부터 기인하는 간섭의 **지속적 가능성**에서 확인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자유와 다르다”²²⁾라고 말한다.

이들은 자유주의적 자유의 상실을 현실적 상실로만 해석하여 자신들의 자유 개념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유를 적극적인 자기 지배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한 유형의 공화주의적 자유관과도 다름을 강조한다. 페팅이 자신의 자유 개념은 자유주의적 자유, 즉 벌린의 구별에 따른다면, 간섭의 부재라는 소극적 자유 개념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은 현실적 간섭만을 회피하기 때문에 미래의 간섭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지배로서의 자유 개념은 자의적 간섭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이지 않은 간섭은 허용한다는 점에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개념과 다르다는 것이다.²³⁾ 또한 페팅은 적극적 자유가 지배의 욕구로부터 나오므로써 민주적 참여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유가 지배받지 않고 싶어 하는 욕구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함으로써 시민의 직접 참여가 자유로부터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본다.²⁴⁾ 이런 입장은 자유에 “비지

생활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니콜로 마키아벨리, 『로마사논고』, 강정인, 안선재 역, 한길사, 2003, p. 87). 즉 마키아벨리는 자유를 미래의 억압 가능성에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에 대한 동기가 억압에 대한 두려움이라 본다. 페팅이 지배받지 않을 욕구라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을 표현하고 있다(Philip Pettit (1997), p. 28).

22) Maurizio Viroli, *Republicanism* (New York: Hill and Wang, 2002), 김경희, 김동규 역 『공화주의』, 인간사랑, 2006, p. 40(이 글에서 쪽수 표기는 영문판을 따른다).

23) Philip Pettit (1997), pp. 25-26과 pp. 65-66.

24) Philip Pettit, *ibid.*, pp. 27-28. 페팅에 따르면, 공화주의적 자유가 민주주의적 자유, 즉 민주적 정치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준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루소 때문이라고 한다(*ibid.*, p. 30). 비롤리 역시 페팅과 동일한 입장

배”라는 부정적 규정을 준다는 사실로부터 자연스러운 듯이 보인다. 이들이 약한 유형의 공화주의인 이유는 자유가 지배의 회피로부터 실현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유에 관해 보다 약한 입장을 띠기 때문이다.

약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이러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는 통치 형태로 법치를 제시한다.²⁵⁾ 즉, 어떤 한 사람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의 자유를 보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법이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페릿은 비자의 성을 영향을 받는 “사람의 이해관심과 관념들(ideas)을 추적”하는 것이라 규정한다.²⁶⁾ 그래서 법은 시민들의 이해관심과 일반적 통념을 반영함으로써 자의적이지 않은 법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법치라 하더라도, 법이 자의적이라면 국가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시민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 이해로부터 자유와 법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약한 공화주의자들은 법을 기능주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거부한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법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해된다.²⁷⁾ 법은 필연적으로 강제적이기 때문에 자유를 속박하는 것

을 견지하는데, 공화주의적 자유관은, 자유가 자신의 규범을 확립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된다는 민주주의적 자유 관념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자율성으로부터 자유를 설명하는 입장과 거리를 둔다(Maurizio Viroli (2002), pp. 41-42).

25) Philip Pettit, *ibid.*, pp. 172-177.

26) Phillip Pettit, *ibid.*, p. 55.

27) 자유주의자인 로크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정치 사회로 돌입하는 이유를 자연상태의 불편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람들은 자연상태에서는 법의 부재, 재판관의 부재, 집행권의 부재로 인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때 구성된 정치 사회도 법의 지배를 받는데, 이때 법은 평화와 안전과 같은 공공선을 보장하는 수단적 기능을 띤다[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udent Edition, 1988), 강정인, 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글방, 2005, pp. 350-353(쪽수는 영문판을 따른다)]. 이런 이해로 인해 자유주의

으로 이해되지만,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속박을 의미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입장을 따를 때 법은 자유보장의 수단이다. 그러나 약한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와 법에 대한 이러한 관계를 부정한다. 이들의 법 이해에서 핵심은 법이 자유의 대립이 아니라 자유의 창출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가 어떤 공동체나 국가의 관습 또는 실정법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에 의해 권리로서 발생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밝혔듯이 페тит은 법이 자유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며, 비롤리는 법적 구속이 정치적 자유의 본질적 요소라 주장한다.

고전적 공화주의 이론가들은 공정한 법이 개인의 선택에 부과하는 구속이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 그 자체의 본질적 요소를 강조한다.²⁸⁾

이러한 법 이해를 따른다면 “법=자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자가 주장하듯이 자유와 같은 자연권이 정치제도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의 설립과 함께 구성된다고 이해한다. 페тит을 따르면 법은 자유에 대해 구성적이며, 비롤리를 인용하면, 법은 자유에 대해 본질적인 것이다. 이리하여 자유와 법은 대립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약한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약한 공화주의는 자유를 자의적 간섭의 부재 및 자의적 간섭 가능성의 차단이라는 비지배로 이해한다. 둘째, 이를 실현하는 수단은 시민들의 이해관심을 반영하는 법에 의한 지배이다. 여기에서 법이 수단이라 표현되었지만, 이는 법이 순전히 기능적 의

적 법 이해가 기능주의적이라 평가받는다. 그러나 로크의 법 이해를 기능주의적이라 평가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로크도 “법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John Locke (1988), §57).

28) Maurizio Viroli (2002), p. 9.

미에서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법에 의해 자유가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구성적 수단임을 의미한다. 셋째, 법의 비자의성이 보장되는 한 법치는 시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 제정과 동시에 자유가 창출되기 때문에 자유의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수반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3. 공화주의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

이와 같이 두 유형의 공화주의는 각기 추구하는 이념이 달라 보인다.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것은 자유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다. 강한 공화주의가 자유를 정치 참여의 자유로 해석하는 반면, 약한 공화주의는 자유를 지배의 부재로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화주의라는 이름을 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들이 공유하는 점이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즉,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들의 입장에서부터 자유관이 도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 인간과 도시국가의 관계를 유기체적으로 이해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는 본성상 존재하며 개인에 선행한다. 왜냐하면 개인이 분리되어 있을 때 자족적이지 못하다면, 개인은 다른 부분들이 전체에 대해 맺는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전체와 맺고 있다”²⁹⁾고 말한다. 개체가 전체의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이러한 유기체적 전체론의 입장에서 개별자로서의 인간은 전체로서의 국가에서만 유의미하게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로서의 국가를 구성하는 법은 개인에 대한 구속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의 지배에 의해 사는 것은 노예화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구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³⁰⁾고 말한

29) Aristotle (1998b), 1253a.

30) Aristotle, *ibid.*, 1310a. 먼저 언급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constitution”이라 할 때 이는 일차적으로 정체(politeia)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다. 이런 사실로부터 두 가지가 유추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첫째, 인간을 이미 정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로 파악한다. 또는 정치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은 인간다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정치 공동체의 법은 개인의 자유를 구성하는 것, 또는 법이 개인의 좋은 삶을 실현함으로써 ‘구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두 번째 부분은 법이 좋은 인간을 만드는 교육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아렌트는 법과 자유의 관계에서보다는 개인과 정치 공동체의 관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공통적이다. 아렌트는 인간의 복수성을 인간의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이 조건 하에서 실재성이 구성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렌트에 따르면, 공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 즉 우리 자신뿐 아니라 타인들에 의해서도 보이고 들리는 현상이 실재를 구성하기 때문이다.³¹⁾ 아렌트는 이러한 실재성을 “인간 관계의 ‘그물망’”이라 부르는데,³²⁾ 타인과 얽혀 있는 그러한 그물망 속에서만 한 개인의 실재성도 획득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실재성이 획득되지 않는다. 한 개인의 탁월한 행위와 말을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음으로써 인정될 때에만 실재성이 획득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렌트에게서의 인간다움이란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정치 공동체 내의 존재로서만 의미 있는 것이다 — 필연의 영역에서 생존만 영위하는 인간은 동물과 다른 없는 저열한 인간일 뿐이다. 그렇다면 역설적이게도, 아렌트가 개별자의 개별성을 탁월성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constitution)를 기본적으로 훌륭한 정체/타락한 정체의 구도 하에 군주정/독재, 귀족정/과두정, 헌정체제/민주정으로 나누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지막인 헌정체제의 영어 번역은 “Constitutional Government”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의미하는 민주정이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미하는 헌정체제는 “올바르게 구성된 법”에 의해 지배되는 정체이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책의 III권 6-11장을 볼 것. 따라서 정체에 의해 지배되는 것 역시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1) Hannah Arendt (1998), p. 50.

32) Hannah Arendt, *ibid.*, p. 183.

의 측면에서 강조하면서도 관계의 그물망을 우선시 하는 사회적 존재론이 그의 이론 근저에 놓여 있다. 이로써 아렌트 역시 개체보다는 정치 공동체를 존재론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공화주의의 강한 유형에 속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렌트의 입장에는 모종의 사회적 존재론이 깔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약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그런 형이상학을 도입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국가가 개인보다 선행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말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의 자유를 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이 국가를 “정치체”에 비유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유를 규정할 때 정치체가 자유롭다는 규정으로부터 개인이 자유롭다는 규정으로 나아가는 점에서 드러난다. 국가가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됨으로써 집단적으로 자유로울 때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실상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체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자유로우면 개인은 자유롭다. 그러나 한 개인이 자유롭다는 것이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이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자유로우면 국가는 자유롭다”는 명제는 성립조차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자의 자유가 국가의 법과 떨어져서는 어떤 대상도 지시할 수 없는 무의미한 구호가 된다. 요약하자면, 국가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의 충분조건이지만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자유의 충분조건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약한 공화주의자 역시 국가가 개인보다 선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논의로부터 강한 유형의 공화주의와 약한 유형의 공화주의 모두는 개인과 정치 공동체의 관계에서 정치 공동체를 우선시 한다는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다. 이를 단초로 이들의 자유관은 국가의 자유로부터 개인의 자유로 나아간다 — 아렌트는 다소 예외적이지만 개인의 자유 역시 공동체와의 관계로부터 의미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점이라 볼 수 있다.

III.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

1. 강한 유형의 공화주에 대한 비판

강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아렌트의 경우 사적 영역과 공정 영역 사이에서 사회가 등장하여 두 영역을 모두 잠식하는 현상을 비판³³⁾한 것도 한편으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주장하는 약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지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권력이 비자의성을 띠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력이 자칫 특수 이익을 지향하는 파당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을 규범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유형은 난점을 지니고 있다. 강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인간이 정치 영역에서 자신의 탁월성을 발휘함으로써 좋은 삶, 즉 행복을 실현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현대의 현실인 가치 다원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난점을 지닌다. 이는 막스 베버가 근대 사회를 ‘세계의 탈주술화’로 규정하면서 전통과 권위가 기대고 있는 가치가 절대적인 것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치 다원주의로 규정한 것과도 대비된다.³⁴⁾ 왜냐하면 자아실현, 그것도 정치적 행위를 통한 자아실현이 최선의 가치로 설정되는 것은 여타의 다원적 가치를 종속적 가치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정치 영역에서 설정된 가치가 공동선 또는 공공선의 형태로 주장되는 경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폴리스를 우선시하는 점, 그리고 아렌트가 인간관계의 그물

33) Hannah Arendt. *ibid.*, pp. 68-73.

34)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학문』,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1996, p. 27.

망을 우선시하는 점과 결합하여 공동체주의적인 정치 이론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다. 공동체주의가 파편화되는 개인들의 삶에 대해 유대성을 강조하는 어느 정도의 함의는 가질 수 있으나, 개인을 억압할 수 있는 전체주의로의 길로 빠질 위험이 다분히 있는 것이다.

아렌트에게 이런 점은 역설적으로 나타난다. 아렌트는 개인이 정치적 영역에서 자신의 고유한 독특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라기보다는 개인의 개별성을 강조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정치 영역에 등장하기를 거부하는 개인에게 그런 주장은 억압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전제되어 있는 사회적 존재론은 개별성과 전체성의 갈등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이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를 조직한다고 말한다.³⁵⁾ 이런 입장은 국가의 좋음은 개인의 좋음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좋은 사람의 좋음과 최선의 도시 국가의 좋은 시민의 좋음은 똑같은 것임에 틀림없다”³⁶⁾고 말하며,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체가 올바른 정체”³⁷⁾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개인의 좋음은 공동체의 좋음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개인의 좋음은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는 좋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³⁸⁾ 그런데 문제는 개인의 좋음이 공동체의 좋음과 갈등할 때이다. 이 경우 아리스토텔레스가 유기체적 관점을 따른다고 할 때, 개인의 좋음이 희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렌트 모두 현실의 가치 다원

35) “[...] 그것[도시 국가]은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모든 도시들이 본성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Aristotle (1998b), 1252b), “도시 국가의 목적은 단순히 삶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질적으로 좋은 삶이다”(ibid., 1280a), “단지 이름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시 국가라고 불리는 것은 خوب을 진작시키는 목적에 헌신해야 한다”(ibid., 1280b).

36) Aristotle, ibid., 1288b.

37) Aristotle, ibid., 1279a.

38) Aristotle, ibid., 1260b.

주의와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공통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개인의 가치를 희생시킬 위험성을 지닌다.

강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이론적으로도 난점을 지닌다. 대표적으로 아렌트는 사적 영역이 전정치적이라 규정하는 한편, 이 영역에서의 지배관계를 허용하고 있다. 자비의 원리를 베풀어, 좀 더 너그럽게 해석해 준다면, 아렌트는 지배관계를 최소한 묵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 영역이 평등의 이념에 기초해 있는 반면, 사적 영역에서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용인되는 것이다. 노동이 인간의 활동적 삶 중 하나라면, 노동은 어떤 인간에게든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렌트는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뿐 아니라, 자유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³⁹⁾ 노동하는 인간 일부의 생산물을 토대로 나머지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착취와 다름없는 것이다. 자유가 인간의 권리라면 이 권리가 사적 영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런 분열적 사고가 초래된 것은 아렌트가 정치 행위의 토대가 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렌트가 경제적 활동 영역으로서의 사회가 사적/공적 영역을 잠식해 나가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등장이 경제활동 주체의 평등에 어떤 순기능적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의 정치 이론을 정당화할 때 근거로 제시하는 사례가 고대 그리스 사회란 점, 그래서 그 사회를 이상화하고

39) 아렌트는 정치 영역에서의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Hannah Arendt (2006), p. 60). 개인의 탁월성 발휘는 타인에 의해 실재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탁월성을 인정해주는 평등한 지위에 있는 타인의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렌트는 평등에 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정치적 영역, 가령 가족에서는 불평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치 영역에서의 평등은 노동자들이 노예화될 때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Canovan은 아렌트의 이런 이중적 태도를 역설적이라 표현한다 (Margaret Canovan, "The Contradictions of Hannah Arendt's Political Thought," *Political Theory*, Vol. 6 (Feb., 1978), pp. 10-11).

있다는 점은 아렌트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해 무관심했음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시 말해 아렌트가 사적 영역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적 영역에서 지배 관계의 가능성을 보다 날카롭게 지적했어야 할 것이다.

지배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인정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을 시민 자격을 획득한 도시 국가의 구성원에게만 부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도시 국가의 존재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시민으로 포함할 수 없다”⁴⁰⁾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지어 기능공들을 시민으로 받아들일 경우 시민의 탁월성이 성취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⁴¹⁾ 노예제의 경우 시대적 상황을 너그럽게 감안해 줄 수 있지만, 필요에 따른 노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렌트와 마찬가지로 지배의 용인 또는 자유의 불평등한 분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강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탁월성 실현을 주장한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탁월성을 드러낸다고 할 때, 문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입장은 소수에 의한 정치, 즉, 엘리트주의를 옹호할 여지가 있다.⁴²⁾ 탁월성은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서만 드러난다. 그러한 비교는 언제나 도태되는 다수를 동반한다. 탁월한 자들만이 인간으로서의 실재를 획득한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다수에 대한 경멸을 의미한다. 게다가 정치적 행위가 주로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

40) Aristotle (1998b), 1277b.

41) Aristotle, *ibid.*, 1278a. 이 논문의 앞에서도 인용했듯이, 이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이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아렌트와 마찬가지로 생존에 필요한 산물을 생산하는 영역을 필연의 영역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런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들, 즉 노예, 기능공 및 노동자들은 삶의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탁월성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42) Canovan은 아렌트가 민주적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엘리트주의의 모습을 보인다는 역설을 지적한다(Margaret Canovan (1978)을 참고).

려하면, 언어 능력의 불평등이 초래할 권력의 불평등 역시 이론의 약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2. 약한 유형의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

약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강한 유형의 공화주의만큼이나 이론적 취약성을 지닌다. 우선 지적할 지점은 자유와 법의 관계이다. 약한 공화주의자들은 자유가 법에 의해 구성된다는 시각을 지지하면서 자유주의적 자유가 자연권으로 해석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들이 자유주의적 자유를 자연권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그러한 자유가 권리가 아니라 순전히 도덕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비물리는 법이나 관습에 의해 유지되는 권리만이 권리이지, 자유주의자들의 자연권은 단지 도덕적 열망이나 도덕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한다.⁴³⁾ 자연권 개념이 정당화되기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을지라도, 법에 의한 규정만이 인간의 권리를 확정한다고 주장한다면, 법적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강제력을 띠는 법은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 그 정당성을 띠게 되는데,⁴⁴⁾ 자유와 평등과 같은 권리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법적 정당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페릿은 법의 정당성을 비자의성 개념에서 찾으지도 모른다. 시민들의 이해관심과 관념들을 추적한다는 그의 비자의성 개념은 법치가 지배 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주장에서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해관심과 관념들의 추적이라는 것은 입법

43) Maurizio Viroli (2002), p. 7과 p. 60.

44) 대표적으로 롤즈는 자유주의적 정당성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시민들이 공통된 인간 이성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들과 이상들에 비추어 보아 지지할 것으로 합당하게 기대되는 헌법적 핵심 사항들에 따라 정치권력이 행사될 때에만, 우리의 정치권력 행사가 완전히 적합하다[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aperback Edition, 1996), 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1998, p. 137(쪽수 표기는 영어본을 따름)].

주체로서 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입법자들의 간섭주의를 허용하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페티트는 두 번째 문제, 즉, 법적 정당성 개념과 관련하여 동의의 개념을 부정하고 논쟁 가능성(contestability) 개념을 도입한다.⁴⁵⁾ 이는 페티트가 동의와 계약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방식을 비판하면서 법적 정당성 개념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논쟁할 수 있는 권리가 원초적으로 주어지지 않다면, 페티트의 논쟁 가능성 개념도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논쟁 가능성 자체는 동의 개념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여 논쟁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기된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티트의 논쟁 가능성 개념은 동의 개념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 개념의 변형이라 이해될 수 있다. 동의 개념 자체는 사람들이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전제한다. 이런 자유가 없다면 동의 개념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논쟁 가능성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실정법에 앞서 논쟁할 수 있는 자유가 도덕적 권리로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한 유형의 공화주의자들은 도덕과 분리된 권리 개념에 대한 정당화와 법적 정당성에 대한 설명의 부담을 지게 된다.

약한 공화주의자들이 직면하는 난점은 자유를 비지배로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의 자유 개념인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의 지배 개념의 핵심은 지배가 자의적인 간섭뿐만 아니라⁴⁶⁾ 자의적인 간섭의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45) Philip Pettit (1997), pp. 61-63. 페티트는 동의보다는 논쟁 가능성 개념이 더 적합한 개념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논쟁 가능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포용적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토론에 근거하는 심의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다(Ibid., pp. 185-190).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이의 제기 가능성 개념이 넓은 의미에서 동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이의제기 자체는 그런 이의의 해결에 있어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합의 속에서 종식되기 때문이다.

는 점이다. 반면 이들은 자유주의적 간섭 개념에 대해서는 현실태로서의 간섭에만 제한한다. 이런 해석으로부터 페팅은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이 자애로운 주인이 노예에게 간섭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지배를 허용한다고 비판한다.⁴⁷⁾ 그러나 이런 해석은 대단히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간섭 자체는 타인의 의지를 전제하는 것인데, 타인의 의지가 좌절되지 않는 한 나의 자유는 간섭에 항상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타인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것이 법의 기능 중 하나인 것이다. 자유주의자인 로크도 입법부가 자의적인 포고에 의해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담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공포된 법에 의한 권리의 보장을 주장한다.⁴⁸⁾ 이는 미래의 간섭에 대한 예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의 자유가 지배 관계를 허용한다는, 즉, 노예로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태까지 포함한다는 약한 공화주의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간섭 자체가 의지를 전제하는 한,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은 간섭의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약한 공화주의자들에 대한 이런 비판이 타당하다면,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와 그리 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페팅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자유주의 일반의 자유관과 동일시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찰스 라모어에 따르면, 홉스-절대왕정의 옹호자였지만-를 비롯하여 벤담이나 밀에 이르기까지는 자유주의적 자유가 불간섭으로 해석되지만, 로크, 콩스탕, 롤즈 등은 자유주의자이면서도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만을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⁴⁹⁾

46) 페팅은 단적으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는 간섭 개념을 불러일으킨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더 나아가서 자의적 간섭, 즉 자의적 토대 위에서의 간섭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한다[Philip Pettit, “The Republican ideal of Freedom,” *The Liberty Reader*, ed. by David Miller (Boulder: Paradigm Publishers, 2006), p. 225].

47) Philip Pettit (1997), p. 64.

48) John Locke (1988), p. 358.

49) 라모어는 페팅의 공화주의적 자유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페팅이 자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개념을 따르면 간섭은 절대적으로 자유의 침해
를 의미한다. 하지만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절대 불가침의 자유를 주
장하지 않는다. 밀은 “위해의 원리”로 이 점을 표현한다. 즉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
는 것”이다.⁵⁰⁾ 자유에 대한 제한은 자유가 방종과는 다른 것으로 이
해되며,⁵¹⁾ 한 개인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되 자유가 고
르게 분배된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즉 롤즈가 제시한 정의의 제1원칙
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도 자유 제한의 원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이다.⁵²⁾ 여기에서 ‘제한’이라는 수식어를 언뜻 침해로 해석해서는 안

유주의적 자유를 너무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라모어는 불간섭으로서
의 자유는 절대왕정주의자인 홉스, 그리고 벤담과 밀 등의 자유 개념에 대
응할 수는 있어도, 콩스땅, 롤즈의 자유 개념에는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한
다. 심지어는 별린이 자유를 둘로 나누어 설명했음에도 별린조차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모두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라모어는 강조한다.
즉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개념은 자유주의 일반의 자유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라모어의 주장이고, 따라서 페티는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을 너무 제
한시켰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Charles Larmore,
“The Critique of Philip Pettit's Republicanism,” *Social,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Philosophical Issues 11 (A Supplement to Nous)*, 2001
참조.

- 50) John Stuart Mill, “On Liberty,” *Utilitarianism, On Liberty,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ed. by Geraint Williams (London: J.M. Dent, 1993), 서병훈 역, 『자유론』, 책세상, 2005, p. 78. (쪽수 표기는 영어본을 따름.)
- 51) 밀의 위해의 원리는 이미 로크에게서도 나타난다. 로크는 자유를 방종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자연 상태가 자연법의 규제를 받음으로써 “어느 누구도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나 소유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또한 “모든 인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구속된다”고 한다(Locke (1988), pp. 270-271).
- 52)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Revised Edition, 1999), 황경식 역, 이학사, 『정의론』, 2003, p. 53(쪽수 표기는 영어본을 따름). 롤즈가 제시한 정의의 제1원칙은 자유라는 가치를 최우선적 가치로 설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우선적 가치에도 평등의 조건이 제한 사항으로 따라 붙는 점을 주

된다. 이는 자유가 방종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유가 진정 의미 있는 자유가 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볼 때, 페티이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자유주의 일반의 자유관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IV. 결론

공화주의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치 공동체가 개인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래서 공화국의 자유라는 말이 가능한 것이다. 공화국의 자유라는 구호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단 공화국의 자유가 주장되는 한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주로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면, 공화국의 자유는 이념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같은 적극적 의미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공화주의가 그 이름에 걸맞기 위해서는 이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공화주의자들은 대중의 정치 참여를 불신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갖는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불평등을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 한에서 이들이 제도적 차원에서 선택한 대안이 법치인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공화주의의 자유관과 보다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필자가 지적한 것은 법의 정당성을 설명할 도구를 이들이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유주의로부터 자연권이나 동의와 같은 개념들을 빌려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럴 경우, 이들은 자유주의와의 구별되는 정치체제의 이념이 되기 어려워 보인

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약한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에 대한 그러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공화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 장점으로서 공동선, 그리고 공동선에 기반한 연대 등은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우월한 점일 것이다. 그럼에도 공화주의만으로는 자유주의의 대체 이념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 니콜로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 강정인, 안선재 역, 한길사, 2003.
-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학문』,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1996.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이진우,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 _____, “Freedom and Politics,” *The Liberty Reader*, ed. by David Miller (Boulder: Paradigm Publishers, 2006).
-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trans. by David Ross and revised by J.D. Ackrill and J.O. Urm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a),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2006.
- _____, *Politics*, trans. by Ernest Barker, introduction by R.F. Stalle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b), 이병길, 최옥수 역, 『정치학』, 박영사, 2007.
- Berlin, Isaiah, “Two Concepts of Liberty,”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박동천 역, 『이야사 별린의 자유론』, 아카넷, 2006.
- Canovan, Margaret, “The Contradictions of Hannah Arendt's Political Thought,” *Political Theory*, Vol. 6 (Feb., 1978).
- Honohan, Iseult, *Civic Republicanism* (New York: Routledge, 2002).

- Larmore, Charles, "The Critique of Philip Pettit's Republicanism," *Social,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Philosophical Issues 11 (A Supplement to Nous)*, 2001.
-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udent Edition, 1988). 강정인, 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글방, 2005.
- Mill, John Stuart, "On Liberty," *Utilitarianism, On Liberty, and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ed. by Geraint Williams (London: J. M. Dent, 1993), 서병훈 역 『자유론』, 책세상, 2005.
- Pettit, Philip,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_____, "The Republican Ideal of Freedom," *The Liberty Reader*, ed. by David Miller (Boulder: Paradigm Publishers, 2006).
-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Revised Edition, 1999), 황경식 역, 이학사, 『정의론』, 2003.
- _____,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aperback Edition, 1996), 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1998.
- Skinner, Quentin, *Liberty before Liber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Viroli, Maurizio, *Republicanism*, trans. by Antony Shugaar (New York: Hill and Wang, 2002), 김경희, 김동규 역 『공화주의』, 인간사랑, 2006.

ABSTRACT**Types of Republicanism and the Critique:
A Strong Type and A Weak Type**

Lee, Myungsoon

I attempt to distinguish types of republicanism. First of all, they divided into a strong and a weak type regarding conceptions of liberty, however. The first interprets liberty as self-rule, arguing that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enables individuals to be human by exerting their excellences, whereas the second understands liberty as non-domination, withholding th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The former takes a holistic point of view in which individuals can attain humanity only in a community while the latter prioritizes a community in that liberty is constituted by the laws of states. Both republicans share the idea that a state or community precedes individuals.

Both types of republicanism can be criticized. First, the strong type conflicts with value pluralism in real politics, and allows domination in realizing freedom. This is because they acknowledge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order to guarantee political participation of a few or many. Second, the weak type can hardly explain the legitimacy of laws without the help of liberal conception of liberty and consent. Moreover, this type falls in a fallacy to identify the negative liberty with the liberal conception of liberty in general. For these reasons, republicanism cannot overcome

these critiques.

Keywords: Republicanism, Liberty, Laws, Individual, State, Aristotle, Hannah Arendt, Philip Pettit, Maurizio Viroli